

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	제정	2002. 11. 8	조례	제1292호
	개정	2003. 11. 18	조례	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전문개정	2006. 11. 14	조례	제1474호	
개정	2008. 6. 16	조례	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	
	2010. 11. 25	조례	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2. 6. 1	조례	제1856호	
일부개정	2015. 11. 5	조례	제2131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 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	
일부개정	2016. 11. 18	조례	제2205호(제명개정)	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	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	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	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	
일부개정	2021. 3. 12	조례	제2720호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광명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 11. 5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1.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라 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.
2. “차상위계층”이라 함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,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.
3. “자활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1. 3. 12>

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2. 6. 1,

2016. 11. 18, 2021. 3. 12〉

1.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또는 시외의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교부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3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
4.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
5.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
6. 국·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1. 3. 12〉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지원금
2.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

제6조(기금 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의2(운용규모) ① 시장은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운용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21. 3. 12〉

②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,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, 재원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1. 3. 12〉

[본조신설 2012. 6. 1]

[제목개정 2016. 11. 18]
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

용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②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<개정 2016. 11. 18>

③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8>

1.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
2. 국채·공채,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
3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

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2>

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0. 3. 25, 2021. 3. 12>

제8조(기금운용위원회)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생활보장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한다.

[전문개정 2021. 3. 12]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>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승인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<개정 2010. 11. 25, 2021. 3. 12>

1. 기금운용관: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

3. 기금출납원: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12>

제11조(결산 및 보고)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,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>

[제목개정 2016. 11. 18]

제12조(감면조치)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,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 삭제 <2016. 11. 18>

제14조 삭제 <2016. 11. 18>

제2장 자활사업지원금

제15조(기금의 지원)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1.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대여
2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3.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4.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영
5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
6.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

제1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1.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
3.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
4.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
5. 제15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
6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

제17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③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6. 1>

제18조(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) ①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당 7천만 원 이내, 전세점포 임대 대출금액은 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규모·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, 2018. 7. 31, 2021. 3. 12>

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(이하 “자활기업 등”이라 한다)은 대여금을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3회(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)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>

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8>

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
2.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
3.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

[제목개정 2016. 11. 18]

제18조의2(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상환) ① 제16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,000만 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 3. 12>

②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·기관·단체는 대여금을 2년 거치 후 3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, 최대 2회(최장 6년)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③ 대여금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[본조신설 2012. 6. 1]

제18조의3(상환기한 연장)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만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, 2021. 3. 12>

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[본조신설 2012. 6. 1]

제18조의4(보험료 지원)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·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, 2021. 3. 12>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,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12>

[본조신설 2012. 6. 1]

[제목개정 2021. 3. 12]

제19조(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8조제3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8, 2018. 7. 31>

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이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③ 시장은 자활기업 등이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2>

[제목개정 2016. 11. 18]

제20조(사업변경)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점검 등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22조(지원취소)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,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(대여)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3장 생활안정자금

제23조(기금의 지원) ①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·자활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③ 일반용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용자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21. 3. 12>

1. 자활의지가 있는 자 중에 의료비·긴급생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
2. 불의의 재난·사고 처리자금

④ 학자금용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 비속의 대학(2년제 대학 포함) 학자금 용자에 한하여 용자한다. <개정 2021. 3. 12>

⑤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 용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0. 3. 25>

제24조(용자기준)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,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용자금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.

제25조(용자금액 등) ① 일반 용자금과 학자금 용자금은 1세대당 각 5백만 원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21. 3. 12>

② 용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, 2021. 3. 12>

1. 일반용자금: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, 이율은 연 1 퍼센트로 하며,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.
2. 학자금용자금: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,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.
3. 연체이율: 용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.

제26조(신청절차) ① 제23조에 따른 용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1, 2016. 11. 18>

1.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
2. 재학증명서(학자금용자에 한함)
3. 용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

4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용자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16. 11. 18>

제27조(용자금의 상환 등)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,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18, 2021. 3. 12>

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용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2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
2.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

제27조의2(상환기한 연장)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만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[본조신설 2012. 6. 1]

제28조(기금대여금 관리위탁)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,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2>

[본조신설 2016. 11. 18]

[제목개정 2021. 3. 12]
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1. 18]

부칙 <2006. 11. 14 조례 제1474호 전문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 내지 제27조는

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」는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「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」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」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.

③ 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㉗ 까지 생략

㉘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생활보장 업무담당 주사”를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, “기금관리 업무담당 주사”를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㉙ 생략

부칙 <2012. 6. 1 조례 제185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기간 만료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 <2015. 11. 5 조례 제2131호,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
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1. 18 조례 제220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삭제 <2021. 3. 12>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3. 12 조례 제27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